

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(양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: 양민규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기대, 김정태, 김제리,
김태수, 김희걸, 박상구,
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
이광호, 이병도, 장상기,
전석기, 홍성룡, 황규복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상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국내 가구 비중의 27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.
-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.
- 이에 반려동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서울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.
- 다.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
라.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함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축산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, 지방자치법, 동물보호법,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 문화 확립과 동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개 식용 금지”란 사람이 개를 음식으로 여기며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 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
2. 시의회 사무처
3.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, 출자기관

제4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개 식용 금지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개 식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자치구에 대한 권고) 시장은 자치구에 대해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8조(시민사회 확산 등) 시장은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시민사회에 전파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행사,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,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2011900000010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양민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1.19

회신일 : 2022.01.19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개 식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(실태조사)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개 식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5
e-mail : kjh0123@seoul.go.kr